

Q.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상세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HRD-Net 홈페이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URL 추가)

Q.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훈련기관의 관리번호 신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에서 1차 검토를 실시하여 검토결과(승인·반려·불승인)를 관할 고용센터로 전달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Q.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 익일(+1일) 부터 심평원 1차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 평균 4,000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할고용센터의 최종 판단까지 약 3~5일이 소요됩니다. 시간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훈련기관 자가 체크리스트가 무엇인가요?

A. 신규 관리번호 발급을 신청하기 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 운영했던 기관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기존 훈련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된다면, 기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법인이 아닌가요?

A. 비영리법인 등 특수한 유형의 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기입하셔도 됩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끝자리가 입력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나요?

A. HRD-Net에서는 하이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이픈을 쓰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Q. 반려와 불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려는 대부분 훈련기관의 기본정보와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며, 불일치 항목을 해소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승인은 대부분 기존 훈련기관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하며, 불승인 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탈퇴 후 재가입 후 신청 가능)

Q. 예전에는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훈련기관관리번호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첨부파일과 훈련기관 기본정보를 비교검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반려'로 판정됩니다.

Q. 어떤 자료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훈련기관 유형에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증명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시설신고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두 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없나요?

A. 두 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집으로 압축 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A.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이나 종된사업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기존 훈련기관이 존재하여 불승인을 받았는데, 기존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A. 'HRD-Net 홈페이지 → 아이디 찾기 → 훈련기관 회원' 메뉴에 접속하여 기존 훈련기관 관리번호와 대표자명을 입력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나 심평원 부정훈련관리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요양보호사교육원의 훈련기관 대표자와 교육기관의 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외 사업자등록증 및 교육기관장과 대표자명이 모두 표기된 교육기관 지정 공문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서에 교육기관장과 대표자명이 함께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시설유형 중 '기타'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A. 훈련기관으로 위탁·인정 가능한 시설유형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훈련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화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타'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로 처리되므로 귀 기관의 유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증빙자료의 소재지와 기본정보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 소재지 일치 여부는 훈련기관 관리번호 사전검토의 기본사항입니다.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려'로 처리되므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상세 주소지(동·호수)까지 동일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증빙자료의 기관명과 기본정보의 기관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 증빙자료의 기관명과 훈련기관이 신청한 기관명이 상이할 경우 '반려'로 처리되므로 증빙자료와 동일한 기관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며,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Q. (학교) 학과 신설로 인하여 아직 학칙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과가 명시된 학칙 제출이 기본이지만, 학과를 신설하여 학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설 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운영계획서 등 학과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장 흔한 반려사유는 무엇인가요?

A. 시설유형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관명이나 소재지 등 기본정보가 증빙자료와 불일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증빙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최종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에 대한 사전검토는 심평원에서 진행하지만 최종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최종 결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귀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신규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종결과가 판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후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유형	관련 예시	증빙자료 예시		
공공직업 훈련시설	<직능법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공공직업훈련시설 현황표에 등록된 기관		
지정직업 훈련시설	<직능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서		
직업능력 개발단체	<직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타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고유번호증 ·직업능력개발사업 법적 근거 확인이 가능한 서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훈련 법적 근거</td> </tr> <tr> <td>·기관명이 명시된 법령 등</td> </tr> </table>	교육훈련 법적 근거	·기관명이 명시된 법령 등
교육훈련 법적 근거				
·기관명이 명시된 법령 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학과가 명시된 학칙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학과가 명시된 학칙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 제38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설치보고 공문 추가 제출		
학원	<학원법 제2조의2에 의해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일반적인 초·중등생을 위한 학교교과 교습 학원은 해당하지 않음 -원격훈련시설의 경우 [원격]으로 구분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 - (목적: 원격교육) -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유형	관련 예시	증빙자료 예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p>-사업주 시설 고용보험 납입 사업장의 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 제외)</p> <p>-사업주단체 시설: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의 훈련시설 (협회, 공제조합 등)</p>	<p>·정관 ·정관에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확인</p> <table border="1" data-bbox="938 383 1385 573"> <tr> <th>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th> </tr> <tr> <td>·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임대차계약서 中 택1</td> </tr> </table>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임대차계약서 中 택1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임대차계약서 中 택1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기관)	<p><직능법·학원법·평생교육법 이외의 타법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p> <p>-요양보호사교육기관 (훈련기관 대표자와 교육기관의 장이 상이한 경우, ①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②사업자등록증, ③ 교육기관 지정 공문(교육기관장, 대표자명 표기)을 모두 첨부하여야 함) 단, 공문 미발급으로 공문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p> <p>-여성인력개발센터</p> <p>-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p> <p>-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등</p>	<p>·교육기관 지정서 ·교육기관 지정서가 없는 경우 ①교육훈련 법적 근거, ②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각각 확인</p> <table border="1" data-bbox="938 857 1345 943"> <tr> <th>교육훈련 법적 근거</th> </tr> <tr> <td>·기관명이 명시된 법령 등</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938 947 1345 1115"> <tr> <th>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th> </tr> <tr> <td>·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td> </tr> </table>	교육훈련 법적 근거	·기관명이 명시된 법령 등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교육훈련 법적 근거						
·기관명이 명시된 법령 등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기타 (지산일기관에 한함)	<p>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 기관</p>	<p>·컨소시엄 협약체결서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p> <table border="1" data-bbox="938 1294 1345 1462"> <tr> <th>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th> </tr> <tr> <td>·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td> </tr> </table>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기타	<p>위 시설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기관)</p> <p>-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p>	<p>·정관 ·정관에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확인</p> <table border="1" data-bbox="938 1671 1345 1839"> <tr> <th>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th> </tr> <tr> <td>·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td> </tr> </table>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본사·지사)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구분	훈련기관 증빙자료
공공 직업훈련시설	사업자등록증 등 + 공공직업훈련시설 공문
지정 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 명칭이 '교육기관 지정서'인 경우

구분	주요 법적 근거	훈련기관 증빙자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장사법 제29조의3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지정서
산모신생아 교육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1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서
식품 훈련기관	식품위생법 제48조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철도 교육기관	철도안전법 제69조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서
보안검색 교육기관	항공보안법 제28조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서
기술사 교육기관	기술사법 제5조의3	기술사교육기관지정서
방재 교육기관	기업재해경감법 제10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유해물질 교육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안전 교육기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5조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 명칭이 '교육기관 지정서'가 아닌 경우

구분	주요 법적 근거	훈련기관 증빙자료
드론 교육기관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항공안전법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 지정서(권장) ※지정서는 실습장을 1개만 표시, 실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실기교육장 추가 승인 통보문'으로 추가 증빙 가능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국가·지자체 설치시) 운영위탁계약서
		(그 외의 자 설치시) 인력개발센터 지정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건설기술인 육성교육 가능	
경비 교육기관	경비업법 제13조	경찰청장 고시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가능	
산업안전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증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기관	산림보호법 제21조의7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서 + 사무실·교육원이 표시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 교육원이 표시된 홈페이지 공표 문서
	산림교육법 제7조의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훈련사업	관련 법령	위탁·인정 가능한 시설유형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업자일반	직능법 시행령 제1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시설 4. 평생직업교육학원 5. 위탁기관장이 인정하는 시설
근로자훈련	직능법 시행령 제1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시설 4. 평생직업교육학원 5. 타법령에 따른 시설
사업주훈련	직능법 시행령 제2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시설 4. 평생직업교육학원 5. 타법령에 따른 시설
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기능대학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7. 공공기관 8. 지자체 추천 기관(비영리기관)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17조 제4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직업훈련시설 2.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4.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5. 지자체 추천 기관(비영리기관)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 제5조	<p>※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보험 가입 기업 2.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 3.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능력 보유 4. 실시직종 관련 기업현장교사 확보 5. 체불사업주가 운영하지 않는 기업 6. 산업재해 공표명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7. 행정처분 기간 중이 아닌 기업